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 회의개최

- 일 시 : 2016. 2. 15.(월) 09:00
- 장 소 : 부구청장실
- 참석인원 : 11명
 -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 지역경제과장, 청소행정과장

□ 심의목록

- 총 5건 : 조례공포안 2건, 조례 1건, 규칙 2건

의안 번호	제출 부서	건 명	결과	비고
16-3	기획예산과 (의원발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비용 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조례에 맞게 해당 조항을 개정)	원안 동의	조례 개정
16-4	교통행정과 (의원발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공포안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자전거 주차장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	원안 동의	조례 개정
16-5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 제고)	원안 동의	조례 제정
16-6	지역경제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안 (조례로 운용하던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을 고압가스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규칙으로 세부기준을 정함)	원안 동의	규칙 제정
16-7	청소행정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 통일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 서식 정비)	원안 동의	규칙 개정

제2회 조례·규칙 심의회

의안 주요 골자

○ 총 5건 : 조례공포안 2건, 조례 1건, 규칙 2건

의안 번호	자치법규명	구분	주요 골자	주관 부서
16-3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조례 개정	<p>1. 제안이유 증인 등 비용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2015. 2. 13.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개정 조례에 맞게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어문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p> <p>2. 주요내용 가.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조례에 맞게 해당 조항을 수정함(안 제4조)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안 제1조 외)</p>	기획 예산과 (의원 발의)
16-4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	조례 개정	<p>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장에게 포괄 위임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므로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단서 조항과 별지 내용을 조례에 반영</p> <p>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맞게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실시 하도록 수정(안 제5조) 나. 상위법령의 내용과 중복 규정 삭제(안 제6조) 다.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장에게 포괄 위임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므로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단서 및 별지) 라. 자전거 주차장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 (안 제9조의2) 마.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을 상위법령과 일치 시키기 위하여 수정하고 신설함 (안 제10조제2항 ~ 제3항) 바. 자전거 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주체를 분명히 하고자 “구청장”을 추가함</p>	교통 행정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자치법규명	구분	주요 골자	주관 부서
			(안 제11조) 사.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 근거 마련(안 제17조)	
16-5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례 개정	<p>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p> <p>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출자·출연 기관을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 (안 제4조, 안 제5조) 다.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 등 (안 제7조) 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구의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른 사업을 지도·감독할 수 있음 (안 제8조, 안 제9조) 마.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안 제11조, 안 제12조) 바. 성과계약 달성 정도,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에 대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 가능 (안 제13조, 안 제14조) 사.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안 제15조)</p>	기획 예산과
16-6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압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안	규칙 제정	<p>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로 운용하던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을 고압가스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p> <p>2. 주요내용</p>	지역 경제과

의안 번호	자치법규명	구분	주요 골 자	주관 부서
			가. 규칙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나. 고압가스사업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다. 고압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안 별표)	
16-7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등 사진 제출 관련 국민 불편 해소방안 권고에 따라 우리구 환경미화원 채용 시 제출하여야 할 사진을 여권용 사진 규격으로 통일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법령상 구체적인 위임이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여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 통일 (안 제11조 제1항 제1호) 나.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청소 행정과



의안번호	제16-3호
의결(보고) 년 월 일	2016. 2. 15.

심의의결사항

심의부의사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출자	기획예산과장 (이영심 의원, 장동우 의원 외 발의)
제출연월일	2016. 2.15.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검 토 의 견 서

【기획예산과】

제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제안이유

증인 등 비용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2015. 2. 13. 개정됨에 따라 해당내용을 개정 조례에 맞게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어문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조례에 맞게 해당 조항을 수정함(안 제4조)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안 제1조 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불필요

다. 사전협의(승인) : 불필요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증인 등 비용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2015.2.13.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례에 맞게 인용 조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이 삭제되면서 같은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 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제안이유

증인 등 비용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2015. 2. 13. 개정됨에 따라 해당내용을 개정 조례에 맞게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어문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조례에 맞게 해당 조항을 수정함(안 제4조)
-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안 제1조 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불필요
- 다. 사전협의(승인) : 불필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증인 등에”를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제3조제2호 중 “소속기관”을 “소속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소속 단체 등으로부터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사람

제4조 중 “관하여”를 “대하여”로, “제7조제1항”을 “제4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5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비용) 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북구의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3. 기타 소속단체 등으로부터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자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의회에서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비용) ①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 -----.</p> <p>② 제1항에 따른 ----- ----- ----- -----.</p> <p>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의회 의원 2. 소속 기관----- ----- 3. 그 밖에 소속 단체 등으로부터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사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
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
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
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
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답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
----- 대하여-----

----- 제4조제2
항 및 제3항---.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

----- 따라 -----
-----.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현행)

제4조(여비지급 및 기준)

-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12.12>
- ②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한다. [본항 신설 2015.2.13]
- ③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한다. [본항 신설 2015.2.13]



의안번호	제16-4호
의결(보고) 년 월 일	2016. 2. 15.

심의의결사항

심의부의사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출자	교통행정과장 (박문수의원 발의)
제출연월일	2016. 2.15.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검 토 의 견 서

【교통행정과】

제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장에게 포괄 위임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므로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단서 조항과 별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음.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에 맞게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실시하도록 수정(안 제5조)
- 나. 상위법령의 내용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어 삭제(안 제6조)
- 다.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장에게 포괄 위임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므로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단서 및 별지)
- 라. 자전거 주차장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 마.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수정하고 신설함(안 제10조제2항~제3항)
- 바. 자전거 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주체를 분명히 하고자 “구청장”을 추가함(안 제11조)
- 사.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 근거 마련(안 제1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1)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6조의2, 제7조~9조, 제1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나. 예산조치 : 연 31,700천원(인건비 28,700천원, 제경비 3,000천원) 소요

다. 사전협의 : 교통행정과,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라. 기타 :

- 입법예고(2016. 1.15. ~ 2016. 1.20.) 결과, 특이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0조, 안 제11조는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며,
- 안 제9조는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에게 포괄 위임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므로 조례 별지에 규정된 요금의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안 제9조의2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거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 안 제10조의제3항은 자전거 주차장 연중무휴 개방 조항을 신설하여 자전거 주차장 상시 개방으로 자전거주차장 이용 불편 민원 해소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 됨.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장에게 포괄 위임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므로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단서 조항과 별지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음.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에 맞게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실시하도록 수정(안 제5조)
- 나. 상위법령의 내용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어 삭제(안 제6조)
- 다.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장에게 포괄 위임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므로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단서 및 별지)
- 라. 자전거 주차장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 마.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수정하고 신설함(안 제10조제2항~제3항)
- 바. 자전거 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주체를 분명히 하고자 “구청장”을 추가함(안 제11조)
- 사.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 근거 마련(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6조의2, 제7조~9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나. 예산조치 : 연 31,700천원(인건비 28,700천원, 제경비 3,000천원) 소요

다. 업무협약 : 교통행정과

라. 기타 :

○ 입법예고(2016. 1.15. ~ 2016. 1.20.) 결과, 특이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의 모든”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로 하고 제4조제4항 중 “자전거주차장”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을 “5년마다”로 한다.

제6조제1항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6조제2항 중 “제5조 및 제6항”을 “제5조”로 한다.

제8조 조 제목 중 “자전거주차장”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하고, 제1항, 제3항 중 각각 “자전거주차장”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를 “강북구”로 하고 “요금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구청장은 자전거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사용료 감면) 영 제6조의2제2호와 관련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50% 범위 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다동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 30% 범위 내
3. 만65세 이상 노인: 20% 범위 내

제10조제2항 중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를 “영 제11조와 법 시행

규칙 제7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은 연중무휴 개방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전거주차장”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하고 제11조제4항 중 “자전거 이용수요가”를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수요가”로 하며,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자전거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 조 제목 중 “자전거주차장”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하고 본문 중 “자전거주차장”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자전거주차장”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를 “영 제2조의3에 따라 매년 4월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고, 자전거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10조제3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전거 주차장 요금표(제9조제1항 관련)

(단위: : 원/구획)

구 분	1회주차시 (1시간당)	1일 주차권	월 정기권	3월 정기권
주차요금	200원	1,000원	5,000원	15,000원

※ 위 요금표는 자전거주차장 이용요금 상한액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u>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의 모든</u> 구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p> <p>1.~3. (생략)</p> <p>② ~ ③ (생략)</p> <p>④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자전거를 <u>자전거주차장</u>이나 자전거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신설 2012.6.22></p> <p>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활성화 계획 (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의 활성화 계획과 연계하여 <u>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u> 수립 하여야 한다.</p>	<p>제4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u>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u> -----</p> <p>-----</p> <p>-----</p> <p>1.~3.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u>자전거 주차장</u>-----</p> <p>-----</p> <p>-----</p> <p>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p> <p>-----</p> <p>-----</p> <p>-----</p> <p>-----</p> <p>----- <u>5년마다</u></p> <p>수립 하여야 한다.</p>

제6조(자전거이용시설 정비지침)

① 제5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
여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1. 자전거 도로의 유형별, 하
천, 공원 등 지역 특성별 정비
기준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
기준

3. 육교·지하도 등의 자전거
경사로에 대한 설치·관리기
준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
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② 제5조 및 제6항에 따라 활성
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
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
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
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
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
거주차장을 유지·관리 하여야

제6조(자전거이용시설 정비지침)

①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제5조-----

-----.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

리) ① -----

-----자전거 주
차장-----

한다.<개정 2012.6.22>

② (생략)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도시관리공단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으며, 요금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삭제>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자전거 주차장-----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

-----강북구-----

-----구청장은
자전거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② <삭제>

제9조의2(사용료 감면) 영 제6조의2제2호와 관련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50% 범위 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

⑤ 자전거보관소, 수리센터, 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 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자전거주차장, 보관소, 수리센터, 대여소 등의 통합운영)
구청장은 생활권이나 여가 활동권 단위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 보관소, 수리센터, 대여소 등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6.22>

제15조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생략)
②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를 강북구에 등록하여 그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 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시설 이용 시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2.6.22>

제17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⑤ 자전거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수리센터, 대여소 등의 통합운영)

-----자전거 주차장-----

제15조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자전거 주차장-----

제17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

----- 영 제2조

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의3에 따라 매년 4월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고, 자전거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8.]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①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2. 공영자전거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영자전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4.28.]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 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5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③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28.]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 자동차 전용도로(고속국도를 포함한다)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 지역 등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2. 급경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3. 기계식 노외주차장 및 지하 노외주차장
4. 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전문개정 2014.4.28.]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모양·수량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된

다는 뜻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나. 기증,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하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

2. 기증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지나도록 자전거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관 중인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28.]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무단방치 자전거의 매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자전거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자전거 1대의 가격이 5만원 이하이고 1회의 총 매각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14.4.29.]



의안번호	제16-5호
의결(보고) 연월일	(2016. 2.15.) (제2회)

심의의결사항

심의부의사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출자	기획예산과장
제출연월일	2016. 2.15.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칩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출자·출연 기관을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안 제4조, 안 제5조)
- 다.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 등 (안 제7조)

- 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구의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른 사업을 지도·감독할 수 있음 (안 제8조, 안 제9조)
- 마.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안 제11조, 안 제12조)
- 바. 성과계약 달성 정도,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에 대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 가능 (안 제13조, 안 제14조)
- 사.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외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16. 1.29. ~ 2016. 2.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제5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정부·서울특별시·구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9조(지도·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10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제11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2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는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한 참석수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이 회의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으로 연평균1억 미만에 해당 됨.

4. 작성자

- 강북구청 기획예산과 행정7급 김동찬 ☎ 901-6134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제6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2.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3.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5. 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6.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7. 그 밖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자·출연 기관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부지사를 말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

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조례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에서 100분의 25 미만으로 변동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0조(경영진단의 실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2.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른 법률에 결손금 등의 보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경영진단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선정을 위한 당기 순손실이나 수익을 계산할 때에 전년도를 기준으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임원에 대한 보수·성과급의 삭감과 해임 등의 인사상 조치
 2. 사업 규모의 축소, 조직 개편과 인력 조정
 3. 기관의 해산 청구나 민영화의 추진
 4.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관계 법령에 규정된 기관
 2.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관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능조정 등의 대상 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심의·의결한 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解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제5조(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된 경우. 다만, 당연직 임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해임 또는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지도·감독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제20조(경영실적 평가) ② 법 제28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 지방공기업법

- 제78조의3(경영지도법인)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경영자문 및 평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경영지도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첨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
- ④ 법인의 설립·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의안번호	제16-6호
의결(보고) 연월일	(2016. 2.15.) (제2회)

심의의결사항

심의부의사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안**

제출자	지역경제과장
제출연월일	2016. 2.15.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로 운용하던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을 고압가스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나. 고압가스사업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다. 고압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안 별표)

(1) 고압가스 판매사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15.11.27. ~ 2015.12.17)결과, 의견 없음
- 2) 부패영향평가결과 : 원안동의
- 3) 성별영향평가결과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고압가스사업”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정하는 고압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고압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제3조 관련)

사업종류	허 기 준	비고
고압가스 판매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소의 부지는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단, 아래의 강화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교통혼잡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 인도, 자전거도로, 교통섬 등으로 인해 차도의 폭이 좁아지는 도로상에 위치하는 경우 - 급경사나 급커브 도로상에 충전소가 위치하는 경우 등 특별히 접하는 도로의 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고압가스의 저장설비 중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m³(액화가스는 3톤)을 넘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안전거리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관련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 따른 거리의 2배로 한다. (단, 아래의 강화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경우 -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가 있는 지역 안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 - 그 밖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 3. 가연성가스·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각의 면적은 20m² 이상으로 할 것. 4.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m²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5. 사무실의 면적은 18m² 이상으로 할 것. 	

관계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① 고압가스를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관청은 7일 이내에 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 특정제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액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2. 고압가스 일반제조

고압가스 제조로서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또는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가.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의 충전

나. 가목 외의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의 충전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이고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것

4. 냉동제조

1일의 냉동능력(이하 "냉동능력"이라 한다)이 20톤 이상(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인 경우에는 50톤 이상, 건축물의 냉·난방용인 경우에는 100톤 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

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나.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의 대상범위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③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의 대상범위는 내용적(內容積) 1리터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 외의 고압가스의 판매(고압가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등록·신고 또는 허가의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신고를 한 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④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판매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방지와 재해발생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

3. 허가관청이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법 및 이 영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⑤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을 할 때 허가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5.4.9.>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술·검사기준

1.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사업소의 부지는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나) 고압가스의 저장설비 중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m³(액화가스는 3톤)을 넘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2) 저장설비기준

라) 가연성가스·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각의 면적은 10m² 이상으로 할 것

5) 부대설비기준

나)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11.5m²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다) 사무실의 면적은 9m² 이상으로 할 것

7) 그 밖의 기준

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목1)가)·나), 같은 목 2)라) 및 같은 목 5)나)·다)에 해당하는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시·군 또는 구(자치구인구를 말한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 2014.8.13.>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

기술·검사·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

1. 특정제조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고압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 표에 따른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2분의 1을 곱한 거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일정 거리를 더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구 분	처리능력 및 저장능력	제1종보호시설	제2종보호시설
산소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1만 이하	12m	8m
	1만 초과2만 이하	14m	9m
	2만 초과3만 이하	16m	11m
	3만 초과4만 이하	18m	13m
	4만 초과	20m	14m
독성가스 또는 가연성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1만 이하	17m	12m
	1만 초과2만 이하	21m	14m
	2만 초과3만 이하	24m	16m
	3만 초과4만 이하	27m	18m
	4만 초과5만 이하	30m	20m
	5만 초과99만 이하	3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 탱크는 $\frac{3}{25}\sqrt{X+10,000}$ m)	20m(가연성가스 저온저 장탱크는 $\frac{2}{25}\sqrt{X+10,000}$ m)
99만 초과	3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 탱크는 120m)	20m(가연성가스 저온저 장탱크는 80m)	
그 밖의 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1만 이하	8m	5m
	1만 초과2만 이하	9m	7m
	2만 초과3만 이하	11m	8m
	3만 초과4만 이하	13m	9m
	4만 초과	14m	10m

비고

1. 위 표 중 각 처리능력 및 저장능력란의 단위 및 X는 1일간의 처리능력 또는 저장능력으로서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m³,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kg으로 한다.
2. 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처리설비 또는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능력별 또는 저장능력별로 각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08.7.16>

보호시설(제2조제1항제23호 관련)

1. 제1종보호시설

- 가. 학교·유치원·어린이집·놀이방·어린이놀이터·학원·병원(의원을 포함한다)·도서관·청소년수련시설·경로당·시장·공중목욕탕·호텔·여관·극장·교회 및 공회당(公會堂)
-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것
- 다. 예식장·장례식장 및 전시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 라.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서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 마.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2. 제2종보호시설

- 가. 주택
-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천㎡ 미만인 것



의안번호	제16-7호
의결(보고) 연월일	(2016. 2.15.) (제2회)

심의의결사항

심의부의사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출자	청소행정과장
제출연월일	2016. 2.15.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등 사진 제출 관련 국민 불편 해소방안」 권고에 따라 우리구 환경미화원 채용 시 제출하여야 할 사진을 여권용 사진 규격으로 통일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법령상 구체적인 위임이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 통일(안 제11조 제1항 제1호)
- 나.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15. 12. 11.~2015. 12. 30) 결과, 의견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권용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장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응 시 원 서

강북구청장 귀하

① 나는 년 월 일 시행하는 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응시자격에 적합할 뿐 아니라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험 합격 또는 고용 후에 허위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고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② 주 소			③ 전화번호		
④ 최종 출신학교	(졸업, 중퇴)		⑤ 자격증		
⑥ 경 력(최근)	근 무 기 간	근 무 처 명		담 당 업 무	
	-				
⑦ 병역 관계					
⑧ 응시 ※ 번호	⑨ 성 명	(한글)	⑩ 성 별	남	⑬ 사 진
		(한자)		여	
	⑪ 생년월일		⑫ 나 이	만 세	

계

.....
인

응 시 표					
① 년 월 일 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시험					
⑩ 응시※번호	⑪ 성 명	(한글)	⑫ 성별	남	⑮ 사 진 (여권용 사진)
		(한자)		여	
⑬ 생년월일		⑭ 나이	만 세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응시표)는 다음 요령에 따라 자필로 빠짐 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① 시 험 일 자 : 해당 시험시행 공고에 따라 그 시험 시행 일자를 기재할 것.
- ② 주 소 : 현재 실제 거주하는 곳을 기재할 것
- ③ 전 화 번 호 : 시험 응시 본인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
- ④ 최종출신학교 : 최종출신학교, 학과 및 학년을 기재하고 수학 구분 중 해당란에 ○표 할 것.
- ⑤ 자 격 증 : 운전면허 등 국가기관 공인 자격증 내역을 기재할 것.
- ⑥ 경 력 : 가장 최근 근무한 공무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할 것.
- ⑦ 병 역 관 계 : 병역사항을 해당란에 ○표 할 것(미필자는 응시자격 없음.)
- ⑧ 응 시 번 호 :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말 것.
- ⑨ 성 명 : 한글과 한자로 기재할 것.
- ⑩ 성 별 : 해당 성별란에 ○표 할 것.
- ⑪ 생 년 월 일 : 생년월일을 기재할 것.
- ⑫ 나 이 : 시험예정일 현재 만 연령을 기재할 것.
- ⑬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4.5cm)을 풀로 붙일 것.

[별지 제2호서식]

환경미화원 고용순위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채용시험 합격일자	신원조사				고용		비고
					의뢰 일자	확보 일자	확보 내용	고용 가부	고용 일자	근무 부서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고용) ①고용대상자로 선정 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u>명함판 사진 2장</u></p> <p>2. · 3. (생 략)</p> <p>② (생 략)</p>	<p>제11조(고용) ①----- ----- -----.</p> <p>1. <u>여권용 사진(3.5센티미터×4.5센티 미터) 2장</u></p> <p>2.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